

## 가정통신문

전주고-학생부-005

전고, 그대의 영원한 자랑이듯  
그대 또한 전고의 자랑이어라.

「전주고등학교」

## 효도·방문 체험학습 관련 지침 안내

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2

본 교무실 : 285-0212

1학년교무실 : 285-3281

2학년교무실 : 285-0215

3학년교무실 : 285-0214

학생부실 : 287-2376

행정실 : 285-0213

F A X 282-6316

### < 효도·방문 체험학습 관련 지침 안내 >

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.

현재 본교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「2017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」에 의거하여 보호자가 동반된 효도·방문 체험학습에 대해 허가 및 출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와 관련하여 허가 및 인정의 범위 및 꼭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해 안내합니다.

- 효도·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·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.
-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효도·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, [서식 8]효도·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.
- 보호자란 법적 보호자(친권자 및 후견인, 사실상의 보호자)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을 뜻한다.
-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,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.  
\* 명예교사 위촉장은 체험학습 인솔 보호자에게 학교장이 수여한다.
-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·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, 담임교사(학교)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.
-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실제 동행인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증명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.

※ 각종 서식은 본교 학생부실 및 각 학년교무실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할 수 있으며, 학생 편으로 전달받으셔도 됩니다.

2017년 9월 29일

전주고등학교장

